

WTO體制下의 主要國의 水產物 輸入管理制度에 관한 研究

朴 明 變* · 金 銀 珠**

-
- I. 序 言
 - II. WTO 체제하의 수산물 무역
 - III.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 IV. EU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 V. 미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 VI. 結 言
-

I. 序 言

1994년 11월에 발효된 UN 해양법 협약과 1995년 1월에 출범한 WTO 체제는 수산물 무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총수출액 중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온 일본(94년 77.7%, 95년 74.4%, 97년 68.2%, 98년 65%)의 수산물 수입관련제도와 미국과 EU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수산물 무역 혹은 수산통상 협상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일본의 수산물 무역은 우리나라처럼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 무역으로 육성되어 왔다. 그런데 1961년 수산물 수입자유화(한국은 97년 7월 1일)를 계기로 수산물 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1971년에는 마침내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1964년에 겨우 320억엔(수출 1,120억

* 金慶人學校 國際通商學部 教授.

** 釜山外國語大學校 經濟學科 講師.

엔)에 불과했던 수산물 수입이 1970년에는 1,150 억 엔으로 급증하였다. 97년에는 358 만 톤에 금액으로 1조 7,212 억 엔의 수산물이 일본에 수입되었다.¹⁾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최대 시장인 일본은 수산물 자급률이 59%에 불과하지만 굴, 피조개를 비롯한 9개 품종과 김에 대해 수입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어패류의 항균성 물질 및 패류 독소 등에 관한 위생규제를 강화해 수입을 제한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다수 발동하고 있다. 1998년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액은 8억 9,550 만 달러,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액은 6,260 만 달러 그리고 EU 주에서도 스페인, 이태리 및 프랑스로의 수산물 수출액은 각각 8,150 만 달러, 990 만 달러 및 360 만 달러이었다.²⁾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일본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수입관리제도를 주로 살펴보고 나아가 미국과 EU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를 분석한다.

본고는 서언과 결언을 포함하여 6절로 구성되어 있다. 2절은 UR 수산물 협상의 경위와 영향 그리고 수산물의 관세·비관세 부문 협상내용을 고찰한다. 3절은 동북아지역의 수산물무역 핵심국가인 일본의 주요품목별 수입실적과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세의 구조와 특징을 그리고 계측불가능성, 다양성, 불확실성 및 협상곤란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비관세장벽이 일본의 수산물수입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4절과 5절에서는 EU와 미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를 관세제도, 수입통관 및 수산물 위생검사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 일본 농림통계협회, 어업백서, 1998, p.24.

2) 1997년의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의 총수출액 중 일본(주요 수출품목: 참치류, 붕장어)이 68%를, 중국(오징어, 피조개)이 8%를, EU(생선류, 오징어)가 6%를, 미국(굴, 참치류)이 5%를 그리고 태국(참치류, 갑오징어)이 3%를 각각 수입하였다.

II. WTO 체제하의 수산물 무역³⁾

1. UR 수산물협상의 경위와 영향

1986년 UR 협상이 개시되었을 때 수산부문은 15개 협상그룹 중 천연자원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 3월 21일 타 협상그룹에서 제출한 천연자원 R/O(Request/Offer) 등을 사무국에 통보한 것을 계기로 관세, 비관세 그룹으로의 통합이 구체화되었다. 이후 1991년 4월 25일 무역교섭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 TNC) 회의에서 15개 협상그룹을 7개 협상그룹으로 통합함에 따라 수산물은 임산물과 함께 시장접근그룹에 포함되어 협상이 진행되었다.

1992년 1월 13일 마무리협상절차(4 Track Approach)에 합의한 이후 수산부문의 실질적인 협상은 독자적인 협상이 아니라 타협상 분야(관세, 비관세분야, 보조금 및 상계조치 분야)의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⁴⁾

이는 농산물부문이 별도의 협상그룹에서 논의됨에 따라 WTO 농산물협정 전반에서 농산물의 다원적인 기능이 고려되고, 교역과 관련된 여러 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UR 수산물 협상은 시장접근그룹의 일부로서 Request/Offer 방식에 의해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세상당치, 국영무역, 최소시장

3) 주문배·박수진,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물 무역제도의 개선방향,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부문 심포지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pp.14~16.

4) 1986년 9월 UR 출범당시에는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협상위원회 산하에 상품협상그룹(Group for Negotiations on Goods : GNG), 서비스협상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 GNS) 및 보호주의조치의 동결/철폐(Standstill/Rollback : SS/RB)의 감시기구를 두었으며, 상품협상그룹 산하에는 다시 14개의 협상그룹을 두어 15개 협상그룹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음. 이후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5개 협상그룹을 ① 시장접근, ② 섬유, ③ 농산물, ④ 규범제정 및 투자, ⑤ 제도, ⑥ 지적재산권, ⑦ 서비스협상그룹 등으로 재편성되었고, 1991년 12월 던诘 사무총장의 최종협정초안이 제출된 직후 개최된 무역협상위원회에서는 i) 시장접근(농산물협상 포함) 양허협상, ii) 서비스 양허협상, iii) 최종협정문의 법제화작업, iv) 최종협정안(fine tuning)에 대한 마무리작업의 4원협상방식(4 track approach)으로 마무리협상이 추진되었음. 대우경제연구소 편, 전계서, pp.22~25 참조.

접근, 수산보조금의 예외조항 등 새로운 보호장치의 도입없이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산업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세화나 관세하향 평준화를 핵심으로 하는 관세조화방식(tariff harmonization)이 아닌 관세인하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는바, 수산물의 수입개방은 1986년도 세율과 1988년도 무역수입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약 32.3%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⁵⁾

2. 수산물 관세/비관세 부문 협상내용

최초의 관세양허에 대한 합의인 1988년 12월의 몬트리올 각료회담에서 1986년 9월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평균 33% 이상을 인하하고 양허를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 1990년 7월 각국이 관세양허계획(IRP: Initial Reduction Plan)제출에 합의하고 양자협상을 통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해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11월 수입가능성이 작거나 경쟁력이 있는 품목, 실행세율이 낮아진 품목, 협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허가 불가피한 품목 144개에 대한 양허계획(C/S)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후 1992년 3월 5일 상품분류방식이 신 HSK로 바뀜에 따라 기제출된 관세양허안을 수정제출하였고 1993년 11월 9일 동일한 내용의 제3차 관세양허안을 제출하였다. 12월 15일 최종타결된 GATT 1994에 대한 UR 의정서(Uruguay Round Protocol GATT 1994)에 의하면 각 회원국이 합의한 관세인하안은 WTO 설립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5개년 동안 균등비율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1986년도 세율과 1988년도 무역수입액 가중치를 기준(약 33%)으로 관세인하하여 1992년 실행세율 수준인 10-20% 수준으로 양허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방대상품목은 i) 수입가능성이 작고, ii) 경쟁력있는 품목, iii) 연근해 생산량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⁶⁾

5) 관세조화방식(tariff harmonization)이란 단순히 현행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하폭을 크게 함으로써 인하 후의 관세율구조를 평준화하는 방식임. 이는 동경라운드 당시 미국, 일본, EC,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주장한 관세인하방식이었음. 이충삼, 무역관계법, 법문사, p.378 참조.

6) 수산청, UR타결에 따른 수산정책방향, 농어업경쟁력강화소위 회의자료, 1994, p.9.

비관세부문 UR 협상은 수량제한, 기술장벽, 복잡한 수입절차, 과다한 수입부담금 등의 기존 비관세조치를 완화 내지 철폐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86년~1991년 동안 수입자유화된 113개 품목을 대상으로 1990년 11월 비관세양허안을 제출하고, 1992년 3월 5일 동 비관세양허안을 GATT 사무국에 재제출하였다. UR 협상에 있어 수산물 비관세부문 협상은 큰 진전은 없었으나, GATT 1994에 대한 UR 의정서에 의하면 비관세조치에 관한 양허의 철회 또는 변경의 경우에 있어 GATT 1994의 제 28조 규정 및 제 28조 BISD 276/26 협상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WTO 뉴라운드협상에 있어서는 이 부문에 대한 추가협상이 예상된다.

한편,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출보조금의 지급은 금지되었고, 환경보존지원이나 낙후지역개발,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의 경우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수산보조금의 운영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III.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1. 일본의 주요품목별 수산물 수입실적

<표 1>에서와 같이 1997년의 일본의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산물 수입물량은 약 280만 톤이며 수입금액은 약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수산물 수입의 품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활어가 약 2만 2천 톤, 신선, 냉장, 냉동품, 어육이 약 173만 톤, 염장, 건조, 훈제품이 약 2만 6천 톤, 갑각류, 연체류가 약 7만 6천 톤이고 조제품이 약 2만 7천 톤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선, 냉장, 냉동, 어육 등의 비중이 약 6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금액기준으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일본의 품목별 수산물 수입현황(1997) (단위 : M/T, 천달러)

분류	수산물 수입	
	수량	금액
0301 (활어)	21,641 (0.8)	408,976 (2.8)
0302 (신선, 냉장어류)	1,729,530 (61.7)	6,061,672 (41.0)
0303 (냉동)		
0304 (어류 피렛, 기타어육)		
0305 (염장, 건조,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25,915 (0.9)	305,106 (2.1)
0306 (갑각류)	754,941 (27.0)	5,702,696 (38.5)
0307 (연체동물)		
1604, 1605 (조제품)	268,832 (9.6)	2,320,784 (15.7)
총 계	2,800,859 (100)	14,799,233 (100)

자료 : 대장성, 일본무역통계(1999)로부터 재작성.

<표 2>에서와 같이 1997년 일본의 동북아 국가와 미국 등으로부터의 활어 수입은 약 1만 1천 톤 정도이고 동 품목의 일본 전체수입 중 비중은 약 50.4 %에 달하고 있고 그 중 한국비중이 23.2 %, 중국비중이 26.9 %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활어품목의 성격상 지리적으로 가까운 2국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신선, 냉장, 냉동어류 및 어육필렛 등의 경우 일본의 동북아 국가와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약 68만 1톤 정도로 동 품목의 일본 전체수입 중 비중은 39.4 %에 달하고 있고 그중 미국의 비중이 21.6 %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 중국, 러시아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염장, 건조, 훈제품의 경우 일본의 동북아 국가와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약 1만 3천 톤 정도로 동 품목의 일본 전체수입 중 비중은 51.3 %에 달하고 있고 그 중 미국비중이 27.0 %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국으로 약 20.6 %,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경우 일본의 동북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약 26만 톤으로 동 품목의 일본 전체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34.4 %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중국비중이 16.2 %로 가장 높고, 다음 러시아로 10.9 %에 이르고 있으며 우

리나라와 미국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제품의 경우 일본의 동북아 국가와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15만 3천 톤 정도이며 동 품목의 일본 전체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동 품목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 품목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보다는 낮게 우리나라와 러시아 역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일본의 주요국으로 부터의 품목별 수산물 수입현황(1997)

(단위 : M/T, 천달러)

국가 분류	4국 합계		한 국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0301	10,897 (50.4)	180,512 (44.1)	5,026 (23.2)	60,515 (14.8)	46 (0.2)	6,642 (1.6)	0 (0)	0 (0)	5,825 (26.9)	113,355 (27.7)
0302	681,125 (39.4)	2,424,566 (40.0)	101,792 (5.9)	448,056 (7.4)	373,812 (21.6)	1,213,875 (20.0)	103,091 (6.0)	379,316 (6.3)	102,430 (5.9)	383,319 (6.3)
0304	13,288 (51.3)	136,217 (44.6)	322 (1.2)	2,476 (0.8)	7,005 (27.0)	70,225 (23.0)	627 (2.4)	3,926 (1.3)	5,334 (20.6)	59,590 (19.5)
0305	259,472 (34.4)	1,447,761 (25.4)	31,684 (4.2)	205,191 (3.6)	23,339 (3.1)	264,366 (4.6)	82,096 (10.9)	597,771 (10.5)	122,353 (16.2)	382,433 (6.7)
1604	152,926 (5.5)	1,462,804 (9.9)	22,904 (8.5)	187,295 (8.1)	3,526 (1.3)	39,341 (1.7)	1,111 (0.4)	20,757 (0.9)	125,385 (46.6)	1,215,411 (52.4)
1605										
총 계	1,117,708 (39.9)	5,651,860 (38.2)	161,730 (5.8)	903,533 (6.1)	407,729 (14.6)	1,594,450 (10.8)	186,925 (6.7)	1,001,770 (6.8)	361,327 (12.9)	2,154,108 (14.6)

주 : ()는 품목별 일본전체 수입량을 100으로 했을 때의 4국별 비중임.

0301 : 활어, 0302 : 신선, 냉장어류, 0303 : 냉동, 0304 : 어류 피렛, 기타어육, 0305 : 염장, 건조,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0306 : 갑각류, 0307 : 연체동물, 1604, 1605 : 조제품.

자료 : 대장성, 일본무역통계(1999)로부터 재작성.

2.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세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⁷⁾의 두 가지가 있다.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

하거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을 말하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란 관세장벽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말한다.

통상정책 수단으로서 관세가 주목받아 온 것은 이것이 무역에 가장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만 이와 함께 한 국가의 통상정책의 방향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아 3국 및 미국의 수산물 수입관세구조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선진국의 수입관세는 저관세국으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경우 평균수준국으로 그리고 중국과 같이 저개발국의 경우 고관세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본관세율 외에도 17%의 부가세가 따로 부가되고 있어 상당히 고관세국이다.

가공단계별로 수입관세구조는 4국 모두 가공정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 즉 경사관세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WTO 및 APEC에 제출한 수산물 부문 교역자유화 계획에 의하면 향후 수산물 수입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수산물 수입관세율 비교

품 명	한 국	일 본	미 국	중 국	비 고
활어 (HS 0301)	10%	1.7-3.5%	0%	30%	
신선, 냉장, 냉동, 어류 피렛, 기타어육 (HS 0302, 0303, 0304)	신선 20% 냉동 10%	3.5-5%	0-6%	25-30%	
염장, 건조,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HS 0305)	20%	10-15%	1-12%	55% + (17%부가세)	
감각류, 연체동물 (HS 0306, 0307)	20%	2-13%	0%	45%	
조제품 (HS 1604, 1605)	20%	5-12%	0-15%	65%	

7) WTO 등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관에서는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이란 용어 대신에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치'라는 용어는 무역제한이나 왜곡의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판단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비관세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 : 러시아의 자료는 입수 불가능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 APEC 1998.

일본의 輸入管理는 지난 80년에 개정된 「外換 및 外國貿易管理法」이 그 기본이 되고 있으나 대폭적인 위임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의거한 관계법령 및 수입관리에 관한 令, 告示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法令으로는 輸入貿易管理令, 關稅法 등이 있고, 規則으로는 特別法, 輸入去來法, 輸入貿易 管理 規則 등이, 告示로는 輸入公表가 있으며, 이외에 輸入發表, 輸入決裁方法, 수입주의사항 등 規制法 體系를 다양하고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일본의 수출입관리제도는 우리나라의 범체계와 비슷하지만 수입승인제도, 사전확인제도 및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전세계 지역별로 방사능, 아황산, 치아황산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양식 생산물에 대한 항생물질과 항균제에 대한 모니터링 잔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日本의 關稅體系는 基本關稅, 協定(WTO)關稅, 暫定關稅 및 特惠關稅로 되어 있으며, 實行關稅는 無關稅에서, 25%(조제식료품) 그리고 40%(품목세번이 1212.20.120)에 이르는 다양한 체계로 되어 있다.⁸⁾ 鐵工業製品의 평균 관세율이 약 2%인데 비하여 水產物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基本稅率을 高關稅로 책정해 놓고 무역 상대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수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雙務協商을 통한 差別的 關稅適用을 일반화하고 있다.

水產物에 대한 關稅率은 일반적으로 加工度가 높을수록, 일본 국내어업과 경합도가 클수록 高關稅를 적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주 어획 어종인 대구,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꽁치(수입쿼터 품목) 등은 일본 연근해어업과 경합도가 크기 때문에 이들 어종의 활어, 신선·냉장품, 냉동품, 필렛은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完製品의 조미김은 25%, 톳과 염장한 청어와 대구는 15%, 가공도가 높은 어란⁹⁾ 및 통조림은 10% 전후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8) 한국 수산물 조합, 1996년도 수산물 관세율표(한국, 일본), 1997.

9) 청어의 卵은 기본세율이 12%, 대구의 卵 및 다시마 청어 알은 기본세율이 15%임. 그 외 미역 11.4%, 톳 8%, 다시마 조정품 11.4%, 냉동참치, 활붕장어 3.85%, 활뱾장어, 신선·냉장·냉동 광어 3.8%, 신선·냉장고등어 10%, 냉동고등어 8.2%, 신선·냉장·냉동복어 5%임.

3. 일본의 수산물수입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1) 개요

비관세장벽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구체적인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볼드윈(Robert E. Baldwin)은 “비관세장벽이란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의 잠재적인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게끔 하는(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채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¹⁰⁾고 정의하고 있다.

윌터(Ingo Walter)는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¹¹⁾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고지마(小島 清)는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직접·간접의 선별적인 규제를 말한다.”¹²⁾고 정의하고 있다. GATT에서 분류한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¹³⁾

첫째, 가격적 장벽으로 이는 수입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상대국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든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수입상품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서, 그 예로는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등이 있다. 둘째, 수량적 장벽으로 이는 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존영역을 지킬 목적으로 쿼터제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품질적 장벽으로 이는 수입상품에 특별한 품질·안전·보건 등에 관한 규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입상품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

10) R. E. Baldwin, *Non-tariff Distortion of International Trade*,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0, p.5.

11) Ingo Walter, “Non-tariff Barriers and the Export Performance of Developing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1, p.195.

12) 小島 清・小宮隆郎 編, 日本の非關稅障壁, 일본경제신문사, 1972, p.4.

13) Sam Laird, Quantifying Commercial Policies, Staff Working Paper TPRD-96-001, World Trade Organization, October, 1996, pp.1~6.

지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행정적 장벽으로 이는 수입절차 및 서류를 까다롭게 하여 정상적인 수입을 저지하거나 수입국측이 국내에서 수입상품이나 자본거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수입제한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음성적 수입규제제도는 한 품목의 수입에 있어서도 수입 할당, 수입승인, 수입확인 등으로 면밀하고 엄격한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자유화품목에 있어서도 輸入監視, 國內法의 實效性 確保, 輸入割當制의 보완, 國際約束의 履行이란 이유를 들어 事前承認制度 및 통관시 確認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이하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수입 할당 제도와 정부의 다양한 貿易活動 介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입 할당제도(IQ System)

수입 할당제도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수입할 수 있는 총량을 국내수요, 국내생산, 가격, 유통 등과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대해 통산성이 일정한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할당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수입 할당은 수입무역관리령 제3조에 의거 수입공표(통산성고시)에 의해 비자유화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수입 할당품목은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 주요 어종을 총망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다.

일본의 수입 할당 방법은 크게 다음 4 가지로 나뉘어진다.

- ① 수요자 할당: 일본 수산청 내시서에 따라 주로 생산관련 단체에게 할당하는 방식
- ② 상사 할당(실적 할당): 일본 수산청 내시서에 의거 신청자가 일정기간내 수입통관 실적에 의해 할당하는 방식
- ③ 선착순 할당: 당해품목의 기준에 따라 일정 할당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선착순위로 할당하는 방식
- ④ 어업자 할당: 어업협정 등을 체결한 당해국 연안수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그 어업과 관련되는 단체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방식

⑤ 합병 할당: 수산청 내시서에 따라 당해 원산지 지역에서 해당 품목의 어업을 경영한 당해국 상사에 출자한 자에게 수입 할당을 하는 방식

일본 정부는 최근 수산물 수입 할당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¹⁴⁾ 일본은 세계 각국이 수산물 무역을 자유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Q제도를 통해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EU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¹⁵⁾ 이에 따라 일본 통산성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물량 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업자의 주소, 성명과 쿼터를 공개하고 수입기간이 끝난 후에는 통관실적도 공식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신규 참가자에 대한 문호 확대를 위해 과거 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우선 배정하는 물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쿼터를 배정 받고도 수입을 하지 않는 업체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자격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전쟁이와 고등어 등 교역국과 마찰이 잦은 일부 대중어종은 활선어 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쿼터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수산물에 대해 수입 쿼터제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쿼터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 쿼터제도(수산물 수입 할당)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일본은 통산성 고시 제 170 호(96.4.30)에 근거, 「방어, 고등어, 전쟁이, 정어리, 대구, 꽁치, 가리비, 대구, 건멸치」 9개 어폐류에 대하여 한국산과 그 외 인도 등 101 개 국산을 대상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수입금액 기준 쿼터를 정하고 있다. HS 번호는 0301.99-2, 0302-0305 및 0307이며 품목명은 활어, 선어, 냉장, 냉동, 염장, 염수 절임 및 건조 수산물(다만 청어, 명태, 명란, 오징어, 마른 오징어 제외) 등이다.

수산물 수입 할당은 년 2회 발표하며 상사별 할당(전년도 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과 선착순 할당(20만 달러 이상 수입자)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상사별 할당만이 사용되고 있다.¹⁷⁾ 수입금액 할당에 있어 인도 등 101

14) 한국수산신보, 1997년 10월 27일자.

15)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해 온 EU측은 96년 11월부터 이 제도가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EU측은 주요 수출 품목인 고등어, 전쟁이가 일본의 수입 할당 제도로 인해 대일 수출의 길이 막히자,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일본측에 통보한 바 있다. EU 외무부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 직전에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일본은 EU가 불만을 갖고 있는 수입 할당 제도에 대해 EU의 수출 주력 품목인 고등어와 전쟁이의 경우 수입 할당 제도에서 분리하고, 이를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물량을 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EU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일본의 수입 할당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것을 유보하였다.

16) 인터넷 자료, <http://www.kotra.co.kr/FTB-cgi/wall/wall>, 1998년 7월 20일.

개 국가에 대해서는¹⁸⁾ 최근 지속적인 쿼터 상향조정(82년 42.5백만 달러 → 98년 172백만 달러)을 허용했으며, 우리나라산에 대하여는 8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연간 40백만 달러로 쿼터 증액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그간의 교섭경과 및 일본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수산물교역실무회의(98년 9월 24일의 제6차 회의, 99년 3월 8일의 제7차 회의) 및 제4차 한·일 신경제협력기구회의(96.10, 도쿄)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2차 규제완화 수정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한편 고위통상실무자회의(96.9.19) 및 통상실무회의(96.10.29)에서 교섭하였다. 83년 이후 수출단가 상승분(83년도 2.82\$/kg → 93년도 5.04\$/kg) 및 102개국 쿼터의 증량 추세를 감안하여, 83년이래 연간 4천만 \$로 고정된 대한국 쿼터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타국과의 균형상 쿼터증액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산에 대한 쿼터증액 불인정으로 대일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은 일본측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쿼터의 차별적 운용 철폐 및 쿼터증량을 계속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 교섭창구를 다각화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통상장관회담, 한·일 수산물교역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대일 교섭을 행해야 한다.

(3) 수입승인제도

일본 정부의 무역개입은 일본의 독특한 산업정책 실시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도, 통제, 육성하게 되어 과생적으로 수입제한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부의 대표적인 무역활동 개입으로는 수입승인제도, 사전확인제도, 기준·인증제도가 있다.

첫째, 수입승인제도는 수입무역관리령에 의한 포괄적인 수입승인제도와 위임법방식에 따른 수입공표 2호의 특정원산지로부터의 특정품목 수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승인하는 것으로, '수입할당을 받아야 할 화

17) 인터넷 자료, <http://www.momaf.go.kr>, 외국의 수산물 검사기관 및 제도, 1999년 10월 20일.

18) 우리와는 달리 상사별 할당, 합병할당, 어업자 할당, 수요자 할당 및 선착순 할당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물, 수입공표상의 특정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에서의 특정화물, 기타 성령 수입 공표에 의해 통산상 등의 승인을 요하는 화물' 등이 속하며, 후자는 국제상품협정 등 조약의 규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일정지역에서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구역에 속하지 않는 해면으로부터 수입되는 어패류 및 연체동물, 국제포경단속조약의 비가맹국을 선적지역 또는 원산지로 하는 고래 및 그 제품' 등이 속한다.

그러나 수입승인이 필요에 따라 수시 발급되고 승인 수입량도 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관성과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수입업자가 수입할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수입할당 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할당을 받더라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오늘날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WTO 시대에 가장 표적이 되는 비관세장벽이다.

일본의 연안어업 등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가 제140회 국회에 제출한 '1997년도 연안어업 등에 관해서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에서는 수산물 수입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⁹⁾ 수산물 수입에 관해서는 수입무역관리령에 의거하여 수입할당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다량어와 미역 등에 관해 동령에 의거하는 사전확인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한다. 또한 국제포경 단속조약국 중 최근까지 포경을 행하고 있는 나라 및 비체약국으로부터의 고래고기 그리고 대만 및 북한 및 중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으로 하는 연어, 송어 및 이들의 조리품에 관해 수입승인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한다. 이들은 비관세장벽의 활용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²⁰⁾

19) 박명섭, 1997년도 연안어업 등에 관해서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수협통계 조사월보, 제29권 제7호, 수협중앙회, 1997. 7, pp.68~78.

20)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수산물에 관해 그 수입국에서의 생산, 유통의 상황, 국내산지에 대한 영향 등의 조사, 분석을 행하는 수입금증 수산물의 대책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 새로이 조성한다. 그리고 수입수산물과의 경합이 격화되고 있는 속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복수의 어협이 연대해서 광역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도자 육성, 지역 수산물의 고도화 추진 등을 실시하는 지역수산물 고도화 추진권 형성사업에 대해 조성한다. 이들은 수산물 수입을 막으려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4) 사전확인제도

사전확인제도는 할당제나 화물의 원산지 선적지역에 관계되는 승인제와는 달리 수입감시, 국내법의 실효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나 실질적으로 일부품목의 직접적인 규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사전확인 품목은 <표 4>와 같다.

<표 4> 수입승인제도에 의한 사전확인 품목

번호	화물명	확인기관
1	미역(간미역)	통관상 확인
2	다량어 또는 청새치의 선박에 의한 수입	통관상 확인
3	국제포경 단속 조약의 가맹국에서의 고래(수입 할당 또는 수입승인을 요하는 것을 제외)	통관상 확인

여기서 대일 미역 수출시 일본측이 수입 사전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미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대일 미역수출은 77년부터 양국간의 민간회의에서 수출입물량 합의를 통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졌으며,²¹⁾ 일본측은 동 합의물량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수입사전확인제를 시행하여 왔다.

통관성의 사전확인 및 확인서 발급제도는 통관성 산하기관인 각 지역 통상 산업국에서 수입금증 품목에 대하여 국가 또는 민간차원에서 합의한 물량의 수입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95년부터는 수출입물량 합의제가 폐지되어 물량에 구애받지 않고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전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²²⁾

21) '76년 「한·일 미역 수출입 민간회의」가 한국측의 해조염산품 수출협회와 일본측 전어련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의 목적은 일본 미역가격의 안정을 위해, 한일간 수입수량의 질서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미역은 이 시점에서 이미 자유화품목이었기 때문에 민간수준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에 정부에 대해 제약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77년 3월 일본정부는 무역 관리령에 근거, 사전확인제도로 민간회의의 협정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국내 수입동향에 대한 파악과 지도체제를 갖추게 됐다.

22) 인터넷 자료, <http://www.kotra.co.kr/FTB-cgi/wall/wall>, 1998년 7월 20일.

그간의 교섭경과 및 일본측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차 한·일 신경제협력기구회의(96.10. 도쿄), 매년의 수산물교역실무회의, 고위통상실무자회의(96.9.19) 및 통상실무회의(96.10.29)를 통해 미역수입사전확인제의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즉 한국산 미역을 수입하는 경우 통상성의 확인서가 필요하나, 확인서 발급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어 시간적 낭비에 불과하다(제출시에는 자동승락)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일본측은 97년 3월에 '미역수입 동향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치곤란'함을 통보하였다. 또한 99년 3월 8일에 개최된 한일 수산물교역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이 동 제도의 폐지를 요청한 데 대하여 일본측은 통계목적상 동 제도의 유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제도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전확인제는 일본내 미역 수입업자에게 번거로움을 줄뿐만 아니라 대일미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실상 수입제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물량에 구애받지 않고 대일수출을 할 수 있게 된 현재,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사전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통상장관회담, 한·일 수산물교역회의 등에서 통상현안으로 계속 제기해야 할 것이다.

(5) 기준·인증제도

기준·인증제도는 법적, 비법적 근거를 가진 각종 기준·인증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자격획득절차의 복잡성, 검사의 엄격성 등으로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강제적인 기술규정 관련 법률은 50여 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은 각각 주무부서를 달리하여 통제되고 있다. 나아가 품질을 표시하는 각종 인증제도로 사실상의 강제 표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표준인 일본공업규격(JIS), 일본농업규격(JAS) 이외에도 민간차원에서의 각종 품질 표시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품질표시제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들 품질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종 품질 표시제도는 사실상 강제기준화되고 있다.²³⁾

또한 수입식품의 표시 적정화를 위하여, JAS 제도에 있어서 고도의 분석기

23) 한홍렬, 주요 선진국 무역규제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6, p.70.

술을 지니는 등록자격 부여기관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이외에, 그 기관에 의한 JAS 자격부여시에 특정품목에 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6) 통관절차와 수입항 지정

수입승인이나 통관시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지연 및 수입항의 제한 등은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통관시 절차상의 문제로서 첫째는 수입절차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수입승인을 요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관계되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둘째는 수입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에 관한 것으로 특정 원산지 및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은행의 승인을 받기 전에 통관성의 사전확인을 받게 하는 이중적 절차, 셋째는 관세행정에 관한 것으로 세관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관계서류의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에 의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다.

일본은 1996년 5월 27일 對日輸出 貝類에서 貝毒이 검출됨에 따라 한국산 全二枚貝에 대하여 통관 전 貝毒検査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 청정 海域産 貝類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19일부터 국립수산물 검사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²⁴⁾

貝毒이 검출되는 계절은 3~5월로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조개류를 연중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통관상의 시간 낭비로 인한 상품의 신선도가 낮아지거나 부패의 가능성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98년 9월 24일 개최되었던 후생성 유육위생과장과의 협의에서 貝類의 主 生產海域에 대하여 1년간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海域에서 생산된 貝類에 대하여 검사를 면제하기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통관검사 면제 조치를 생굴이 획득한 사례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산 생굴의 위생검사 면제에 관한 외교 구상서를 일본 외무성과 교환하고 「생식용 생굴 대일수출 요령」을 제정하였다. 한일간에 교환된 이 외교 구상서는 한일 수산물교역 실무자 회의 개최시 해양수산부측이 제안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지정해역의 수질 및 패독에 관한 수산진흥원 자료와 수산물 검사소에서 마련한 생굴 가공공장

24) 貝毒検査에는 마비성과 下痢性(설사) 두 가지가 있는데 마비성의 경우는 1일, 下痢性的 경우는 2일이 소요되고 있다. 貝毒 검사료는 1회 17,000~38,000 엔 정도로 연간 총 건수로는 막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

의 시설 및 위생기준을 일본측에 제시하고, 일본의 위생관련 법령의 기준과 동등함을 납득시켜 합의한 후 지금까지 한국산 수출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10여 차례 협의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생굴은 신선도 보장기간이 짧으며, 여타 어패류에 비하여 위생처리가 어렵고 복잡한데다, 통관 검사까지 받을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일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일본의 통관검사 면제조치로 많은 물량의 생굴 수출길이 열렸으며,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수산물 검사소에서 가공공장의 등록을 받아 점검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²⁵⁾

다음으로 수입항의 제한적 지정은 시장접근도와 선도유지의 제약 및 수송비용 가중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닌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對日 輸出經路는 연근해산 어획물의 경우 대부분 下關港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며, 다랑어·새치류 등 원양어획물은 清水港으로, 성게, 활꽃게, 활새우 등은 항공수단으로 空輸되고 있다. 일본측은 도쿄, 시미즈, 구리하마항을 참치 양륙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여 왔으나 우리 측의 요구에 따라 99년 3월 8일에 개최된 한일 수산물 교역실무회의에서 야이즈항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자료가 오래 되었지만 1990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 수산물 중 일본 下關港으로 반입된 물량은 전체의 55.6%에 이르며, 품목별로는 피조개가 99.8%, 둛이 97.7%, 패주가 97.6%, 미역이 89.9%, 기타 수산동물이 88.2% 등으로 타품목에 비해 搬入比率이 상대적으로 높다.²⁶⁾

(7) 복합적인 수입규제조치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수산물에 대해 일본이 복합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례로서는 김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수입 김에 대한 수입창구 단일화, 고관세의 종량세 적용, 수입절차의 복잡 및 각종 수수료의 과다징수로 우리 김의 대일수출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사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김을 수입쿼터 품목으로 지정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매년 250만 속을 할당하여 오다가 수입

25) 인터넷 자료 <http://www.momaf.go.kr:85/Ftp/Kor/stra/bodo/0707A.htm>, 1998년 7월 15일.

26) 박성쾌, 김정봉, UR 이후 주요 수산물 수출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pp.48~49.

상사 자격제한 및 수입창구 단일화 등의 수입규제로 78년부터 94년까지 대일 김 수출이 중단 된 적이 있으나, 지속적인 대일 교섭으로 95년부터 수출이 재개되었으며 양국 민간이 합의한 물량 범위 내에서 수출하고 있다.

수출물량 및 쿼터물량은 95년에는 마른김 11.6만 속(합의물량 20만 속)이었으며, 96년에는 마른김 5.4만 속(합의물량 28만 속) 그리고 조미김 5만 속(합의물량 5만 속)이었으며, 97년에는 마른김 합의물량 31만 속, 조미김 합의물량 9만 속이었다.

마른김의 경우 일본의 수입창구를 생산자 중심의 「일본 김 수입조합」으로 단일화 시켜 수입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여 김 수입업체의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수입절차를 복잡하고 각종 수수료의 과다징수로 수입가격을 왜곡시키고 있어 사실상 수입제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국의 민간수출입조합(한국측 수산물 수출조합: 일본측 김협회)이 서로 수출입 물량을 합의하고 있다.

마른김의 경우 L/C 방식이 아닌 입찰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수출물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수출용 김(국내 소비규격과 다름)을 별도로 생산, 운반하여야 한다. 따라서 未입찰물량이 발생할 때에는 수출업체에 큰 부담이 된다. 또한 수입 김에 대하여 고관세의 종량세를 부과함에 따라 합의물량의 전량 수출이 어려운 실정임이다. 마른김은 관세가 150 엔/속(종가세 환산시 약 38.5%)으로 속당 수출가가 95년에 390 엔이었으며, 조미김은 종가세로 25%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수입조합 및 협회의 수수료(6%) 등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어 한국산 김(조미김)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본 국내 판매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냉고 있다.

이에 대한 그간의 교섭경과 및 일본측 입장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수산물교역실무회의 및 한·일 신경제협력기구회의 등을 통해 일본측에 ① 양국 정부가 수출입 물량을 결정, 동 범위내에서 양국 수출입상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의 김수입조합은 전체 수출입 물량만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과, ② 수출입 방식은 상사간 L/C방식에 의하도록 하며, ③ 김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① 97년 3월에 수출입 물량은 양국 민간단체간 commercial base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② 수입조합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는 민간 베이스의 거래상의 문제로 정부의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제4차 한·일 통상장관회담(97.7.31) 및 고위통상실무자회의(97.9.19) 및 통상실무회의(97.10.29)에서 관세인하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UR에서 합의한 대로 성실히 추진할 계획이나 자국 관련산업의 수급안정 및 영세산업 보호가 필요하여 한국 측의 요청대로 추가 관세인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측의 이해를 요구하였다.²⁷⁾

이에 98년 9월 24일 개최되었던 한·일 정부간 수산물 교역회의에서 '일본 김협회'의 한국산 수입김의 독점구매권 및 수입상사 신규참여 제한을 폐지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99년 3월 8일 개최되었던 제7차 한·일 수산물 교역실무 회의에서 우리측이 김 수입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데 대해서 일본측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을 약속하였다.

- 김 수입상의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신규 수입상의 참여를 가능토록 함.
- 김 수입상사가 직접 일본시장에 판매 가능토록 함.
- 상사 및 선착순 할당분에 대해서 수수료 폐지

한편 1999년부터는 연간 쿼터량을 69만噸으로 결정하여 수요자 할당, 상사 할당, 선착순 할당으로 수입업체에 배정하는데 기준의 김 수입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다.²⁸⁾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할당 : 일본 수산청 내시서에 따라 주로 생산관련 단체에게 할당하는 방식에 (46만噸) 의거 김 협회에 할당하였으나 김 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전국어업협동 조합연합회에서 한국의 수산물수출입조합과 협의를 거쳐 한국수출업체와 일본의 수입업체가 모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거 수출

② 상사 할당(실적 할당) : 일본 수산청 내시서에 의거 신청자가 일정기간내 수입통관 (18만噸) 실적에 의해 할당하는 방식으로 수입물량을 배정하였으나, 한국은 자율경쟁 원칙에 의거 일본의 상사 할당을 받은 업체와 수출계약한 모든 업체에게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선착순 할당 : 당해품목의 기준에 따라 일정 할당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선착순위로 (5만噸) 할당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일본의 선착순 할당을 받은 업체로부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모두에게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별 김의 수입거래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인터넷 자료, <http://www.kotra.co.kr/FTB-cgi/wall/wall>, 1998년 7월 20일.

28) 인터넷 자료, <http://www.momaf.go.kr/trade/view2.asp>, 1999년 10월 13일.

<표 5> 김의 수입거래형태 차이

수입 대상국	수입거래 형태	거래형태별 특징	기타사항
한국	<input type="radio"/> 일본이나 한국에서 입찰	<input type="radio"/> 매년 수입량은 양국간 협의에 의해 정해짐	<input type="radio"/> 협의주체: - 일본: 전어련 - 한국: 수산물 수출입조합
기타국	<input type="radio"/> 주로 L/C방식 사용 <input type="radio"/> 소액거래시 T/T방식	<input type="radio"/> 일반적인 거래방식으로 L/C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량 거래시는 T/T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IV. EU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1. 개요

EU의 수산물 수입제도는 크게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사, 수입규제의 카테고리 내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제도는 WTO 및 EU 규정 범주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EU의 수입관련제도는 EU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EU는 수산물 수입 시 일정기간 동안 최저가격제 시행 및 가격에 따른 관세율의 조정 등 품목별로 다양한 수입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의 수입은 일반 상품 보다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수입되고 있는데, 수산물이 국민의 건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 수입통관

EU 역내산 상품의 수입은 1993년 1월 1일 부로 발효된 EC Regulation 2726/90에 따라 기존의 EU 역내산 상품의 수입통관에 적용되어 왔던 EU 국가

간 상품통관제도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폐지되고 단일시장 통관서류 (The Single Administration Document ; SAD)로 대체되어 간편화되었다. 수산물의 경우 수입에 따른 부가서류의 구비가 필요하다. EU 역외산 수산물의 경우 일반 상품의 수입과 같이 회원국의 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한다.

3. 관세제도

EU 회원국간의 통관시에는 공동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EU 외 국가의 경우 회원국의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다.

1997년 프랑스 계맛살 총 수입시장의 52.2%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계맛살의 프랑스 수입관세율은 20%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스페인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인 계맛살의 수입관세율은 9.6%이다. 1997년에 냉동수산물이 약 87만 달러 수준으로 처음 수출된 포르투갈은 역외국의 계맛살에 대해 16.4%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4. 식품위생검사제도

식품이 EU 국가 (노르웨이의 경우 수산물만)로부터 수입될 경우 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함으로써 일반적인 검역 (Routine Inspection)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1년 7월 15일자로 발효된 EC 이사회(EU)의 EEC/91/492 지침은 마케팅 위한 위생기준, 어획된 해역의 확인, 어류의 수송기준, 수산물의 의무 포장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²⁹⁾

EU는 1991년 7월 이사회지침(91/493/EEC)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 및 역내 판매에 관한 위생조건을 수립하고, 1997년 4월 집행위결정(97/296/EC)에 따라 1998년 7월 1일 이후부터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국의 생산시설(establishments)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1995년 10월 우리나라는 EU와 한국산 수산물 수입에 관한 조건(95/454/EC)에 합의.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규정이 EU 규정과 완전히 합치된

29) OECD, Review of Fisheries, 1996, p.87.

다는 것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보증하여 EU에 등록된 시설물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등록과 관련하여 EU 집행위내 동 절차완료에 상당한 기간(6개월내지 1년)이 소요되고 있는 바, 최종 등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등록신청중인 시설물로 부터의 EU 수산물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일부 EU 회원국(특히 스페인)에서는 EU 규정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은 식품첨가제가 첨가된 우리나라 기업체의 가재맛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경우가 있었는데 EU 관련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회원국 세관통관시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³⁰⁾

EU 역외 국가산 식품은 영국의 경우 회원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위생안전검사 (Safety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동 검사는 동물성 식품(Food of Animal Origin), 식물성(Food not of Animal Origin) 식품여부에 따라 상이한 검역절차를 따른다. 영국 영토내에 수입된 식품은 식품안전규정 (The Food Safety Act 1990) 및 식품관련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모든 수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위생안전검사증(A Health Certificate)을 첨부해야 한다. 위생안전 검사증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검사증일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당사국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포장지에 계맛살의 주성분 및 배합율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위생검사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의 계맛살 생산·수출업체는 생산시설, 작업공, 포장 및 첨가물 또는 색소 등이 프랑스 위생규정에 부합되어야만 대프랑스 수출허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위생검사원의 해외(수출국) 파견에 따른 경비를 외국生产企业가 부담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공정 및 작업공들에 대한 위생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96년 1월부터 EU로부터 위생규격 인증을 받은 51개 외국업체들만이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이 위생인증 자격은 매년 10월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개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30)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1999, p.42.

V. 미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1. 개요

기본적으로 수입제한은 없지만, 세 가지 차원에서 규제가 있다. 즉 소비자 보호차원, 공정무역 및 국내산업 보호차원의 관리 및 정치·외교적 차원의 수입통제가 그것이다.

소비자 보호차원(위생 및 안전관리)의 규제는 주로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에서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에 유해한 제품을 통제하고 있다.

공정무역과 미국 국내산업 보호의 차원에서 일반관세, 쿼터관리,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뿐만이 아니라 불공정무역 관행국가에 대한 제재,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수산물 수입을 통제하는 예로서, 거북제거 장치가 없는 그물로 잡은 새우수입을 금지하거나 돌고래 보호장치 없이 어획한 참치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은 환경단체들의 바다거북 보호조치 주장에 따라 1996년 5월 1일부터 바다거북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조업하는 새우잡이 국가로부터의 새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미 국무성으로부터 바다거북 보호장치(Turtle Excluder Devices : TEDs) 설치 등 미국이 인정하는 바다거북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매년 새우수출 가능국가를 인증 발표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새우는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어획한 원양산 새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이러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인도, 파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가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으며(1998년 4월), 미국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패소(1998년 10월)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WTO 결정사항을 국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³¹⁾

2. 관세제도

미국의 관세법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관세법과 법원의 판례법으로 구성된다. 1997년 3월부터 관세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에 의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사전 유권해석 제도가 있으므로 특정품목에 어떤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미국의 관세청에 문의함으로써 검토하면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실정에 맞게 세분한 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에 의거한 총 9,121 개에 달하는 방대한 관세율표를 운용하고 있다. 관세율은 무세에서 35%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신선품보다 가공품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품분류가 일반통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1990년 미국 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노르웨이의 양식 연어가 미국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91년 4월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대체로 캐나다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관세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3. 통관제도

1,250 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수입은 정식신고가 요구된다. 정식신고의 경우, 운송인은 화물도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는 물품도착 후 5 근무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절차는 세관서식 3461 (Immediate Delivery Application)과 송품장 1부를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시작되며, 이 때 세관검사직원은 물품의 반출전액 심사 및 서류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ACS (Au-

31)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1999, pp.22~23.

tomated Commercial System)에 조회한다. 만일 필요할 경우, 세관검사 직원은 서류검사가 완료된 후 수입자에게 서류를 돌려주고 물품을 반출한다. 수입자는 화물 반출후 10 근무일 이내에 정산신고서(세관서식 501) 제출 및 관세를 납부 한다.

4. 수산물 위생검사제도

(1) 수산물 검사제도

미국에서 상품의 제조 또는 소유자는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제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올바른 표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 FDA는 식품이 부패하지 않고 그릇된 상표를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운영 및 시료제품을 검사한다.

시설검사는 FDA가 관리하는 법률에 합치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의깊고 주요한 공식적인 시험이다. 검사는 위법이 발견되었을 때 법적인 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FDA는 일반적으로 각 주간의 무역에 관련된 모든 식품가공, 처리 및 보관에 대하여 검사한다. 시설은 위생조건과 가공, 안전한 제품의 처리방법 그리고 우량제조실무(21 CFR Part 110)의 일반적 이행에 대하여 검사한다. 1997. 12. 18 일부터 모든 어류 및 수산제품 가공업자는 HACCP 규정(21 CFR Part 123, 부록 I)의 이행에 대해 검사를 받는다. 가열처리하고 밀봉포장한 수산식품은 20년 이상 HACCP 유사규정이 적용되어 왔다(21 CFR Part 113). 제품은 오물, 부폐, 중량부족 그리고 표시위반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검사될 수 있다. 제품의 시료는 분석을 하거나 감시를 목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심스러운 이유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채취한다. 즉석에서 먹는 제품처럼 생산하는 수산제품이 더 큰 위협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공정은 신선어류 필레트나 포장과 같이 위험도가 더 낮은 과정보다 더 자주 검사대상이 된다.

수산식품 검사의 경우 FDA의 운영국, CFSAN의 수산식품국은 매년 현장검사 및 감시활동을 관리하는 이행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동 프로그램은 중점 생산지역, 목표제품의 형태, 시료의 구성, 특정제품에 대해 행하는 분석형태, 사용되는 분석방법 등을 기술한다. 만약 연도내에 특정제품에 대한 관심이 생기

면 그 특정관심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 그리고/또는 시료채취는 문서화된다.

수산식품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안전성과 관련된 관심사항의 대부분은 「어류 및 수산제품의 위해 및 관리지침」이라 불리는 FDA 출판물에 기록되어 있다. 가공업자는 그들의 HACC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동 지침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수입요건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21 U.S.C 381) 801 절은 수입전이나 수입자/중매인에게 안전하게 도착된 후에 관계없이 미 세관을 통하여 미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신청된 식품을 검사할 권한을 FDA에게 주었다.

수입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는 각 선적상품의 통관을 위해서 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자는 또한 그들 제품의 송장과 함께 세관통관문서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전자문서의 발달은 이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있다. 세관은 FDA가 규정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받은 신고를 FDA에 통지한다. FDA는 통관시 시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결정한다.

모든 수입수산식품은 국내상품과 같이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품질이 나쁘거나 그릇된 상표를 붙이거나 비위생적인 조건하에서 제조, 가공 또는 포장된 제품은 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최근에 수입품과 관련한 다수의 식품질병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FDA의 절차는 미국 국민 및 그 의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 결과로 외국의 공급자나 그들의 정부가 미국에 인도된 식품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증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수입된 수산제품이 HACCP 조건하에서 가공되었다는 결정 및 검증을 위한 4 가지 조건을 정한 21 CFR § 123. 12의 이행이다. FDA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MOU를 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FDA와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어류 또는 수산제품을 수입하는 때, 수입자는 반드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임을 보증하는 문서로된 제품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이 규정을 따른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형태의 확실한 단

계를 가져야만 한다(예, 특정한 HACCP기록, 연속 또는 롯트당 정부 또는 제3자 증명, 가공업자의 HACCP 계획 및 보증에 대한 기록, 검사기록, 제품시험 기록등).

VII. 結 言

이상에서 일본, EU 및 미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를 고찰했는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최대시장인 일본을 가장 많이 다루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의 특징과 일본으로의 수출증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은 55년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한 후 수입자 유화 추세 속에서 60~62년 사이에 새우, 참치, 연어 및 이들의 조정품 등 대부분의 품목이 자유화됐다. 현재 수입 할당제도의 대상 어종은 비자유화 품목으로 일본 연·근해수역에서 주로 어획되고, 외국과의 어장경합이 발생하는 전쟁이, 고등어 등이다.

WTO 체제하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가지는 수단 및 대책은 한계를 가지지만,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최대 시장이며 수산물 자급율이 약 59%에 불과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수입승인제도, 사전확인제도의 운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제도적인 정책을 통해 일차적으로 수입을 통제해 왔다. IQ 제도, 수입승인제도, 사전확인제도는 「수입 무역관리령」이라는 법적 근거 하에서 운용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폐류의 항균성 물질 및 폐류 독소 등에 관한 위생규제를 강화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저가격어까지 수입되는 수입수산물 증대가 미치는 문제점 및 그 심각성으로 일본어업인들은 국내 수급동향에 따른 질서 있는 수산물 수입을 희망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업인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를 중심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한 IQ제도의 존속·유지를 정부측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한편 비관세장벽은 복잡성, 불확실성, 계측불가능성 등의 제반 특성 때문에

상호간의 양허 정도를 비교하여 이를 균일화시킬 수 있는 자료의 작성이 불가능하고, 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설사 정부간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제거를 위한 협상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수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양류항 확대와 수입쿼터 제도 폐지, 패류의 통관전 사전검사제 폐지 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관련조치의 폐지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하여 하여, 정부간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소비자 특성과 유통체계 및 수입제도 등의 철저한 연구가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경쟁국과의 비교우위 확보와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기반 조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參 考 文 獻

- 김용일, WTO 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1995.
- 김태형, 우리나라 비관세조치의 발전적 개선방향 -APEC의 비관세조치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토의 96-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2.
- 박명섭, 1997년도 연안어업 등에 관해서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수협통계 조사 월보, 제29권 제7호, 수협중앙회, 1997. 7.
- 박성래, 김정봉, UR 이후 주요 수산물 수출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손정식 · 한홍렬, APEC 비관세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98-09, 1998.
- 주문배 · 박수진,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물 무역제도의 개선방향,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부문 심포지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 한홍렬, 주요 선진국 무역규제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6.
- _____, "APEC역내자유화논의 및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상)", 관세, 제31권 제345호, 1999. 6.
- 홍성걸 · 주문배 · 백기창 외 4인, 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1.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1999.
- 일본 농림통계협회, 어업백서, 1998.
- 한국 수산물 조합, 1996년도 수산물 관세율표(한국, 일본), 1997.
- 한국수산신보, 1997년 10월 27일자.
- Sam Laird, Quantifying Commercial Policies, Staff Working Paper TPRD-96-001, World Trade Organization, October, 1996.
- OECD, Review of Fisheries, 1996
- <http://www.kotra.co.kr/FTB-cgi/wall/wall>, 1998년 7월 20일.
- <http://www.momaf.go.kr>, 외국의 수산물 검사기관 및 제도, 1999년 10월 20일.
- <http://www.kotra.co.kr/FTB-cgi/wall/wall>, 1998년 7월 20일.
- <http://www.momaf.go.kr/85/Ftp/Kor/stra/bodo/0707A.htm>, 1998년 7월 15일.
- <http://www.kotra.co.kr/FTB-cgi/wall/wall>, 1998년 7월 20일.
- <http://www.momaf.go.kr/trade/view2.asp>, 1999년 10월 13일.

ABSTRACT

A Study on Seafood Import Management System of Major Countries in the WTO

Pak, Myong Sop · Kim, Eun Joo

The paper aims to introduce and to discuss seafood import systems in terms of tariff and Non-Tariff Measurements which have been changed by the establishment of WTO. The paper can be used as materials for seafood trade policy making. The Non-Tariff Measurements for seafood import control in Japan are explored as follows; Import Quota, Import License, Pre-identification, Standard system, Customs Clearance Procedure, Import Port Nomination, Import Channel, Unification.

The paper is composed of six chapters. Chapter 1 shows the current situation of seafood trade of major countries and background of the research. Chapter 2 deals with fisheries negotiations in the Uruguay Round, their impacts and major issues of tariffs and Non-Tariff Measurements in seafood trade. Chapter 3 analyzes seafood import of Japan, which is the core nation in the seafood trade of Northeast Asian Region, by item an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eafood import tariff including Non-Tariff Measurements. Chapter 4 and chapter 5 tackle seafood import management system of EU and USA respectively. Chapter 6 summarizes the issues of seafood import by focusing on Japan which is the biggest import market of Korean seafood.

Key Words : WTO, Seafood Import Management System